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114 |
|----------|------|

제출년월일 : 2006. 11 . .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2호) 개정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
리주체,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 조합간의 분쟁에 대
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그 밖
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 등 역할 구체화(안 제3조)
- 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 구성(안 제4조)
- 위원회 회의 및 의결 방법 규정(안 제6조)
- 조정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 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 범위 설정(안 제15조, 제16조)

3. 근거법령

- 「주택법」 제52조
-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4. 의안전문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첨부 : 1. 근거법령(발췌본)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천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 하는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덕망을 갖춘 자
5. 부시장, 관광건설국장

-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건설국장이 된다.
-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당해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

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 대리인의 선임

제10조(조정 신청 등)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 및 별표 1의 신청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 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 기간 등) ①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제14조(조정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사유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조정의 효력) ①조정당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조정

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관계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

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위원회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별지제1호서식]

|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신 청 서 | | | |
|---|-------|--|--------|
| 신 청 인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피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분쟁조정대상 | 아파트명 | | 세 대 수 |
| 공동주택현황 | 위 치 | | |
| 조정신청 내 용 | | | |
| 분쟁발생 사 유 | | | |
| 당사자간 교섭경과 | | | |
| <p>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p> | | | |
| <p>구비서류 :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p> <p>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p> | | | |

[별지 제3호서식]

|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안 | | | | | |
|--|-----|-----|------|------|------|
| 조정건명 | | | | 조정번호 | |
| 신 청 인 | 성 명 | | | | 전화번호 |
| | 주 소 | | | | |
| 피신청인 | 성 명 | | | | 전화번호 |
| | 주 소 | | | | |
| 신청일자 | | | | 조정일자 | |
| 조정신청 내 용 | | | | | |
| 조정내용 | | | | | |
| <p>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p> <p style="font-size: 1.2em; margin-top: 20px;">년 월 일</p> | | | | | |
| 구 분 | 성 명 | 서 명 | 구 분 | 성 명 | 서 명 |
| 위원장 | | | 부위원장 | | |
| 위 원 | | | 위 원 | | |
| 위 원 | | | 위 원 | | |
| 위 원 | | | 위 원 | | |
| 위 원 | | | 위 원 | | |

[별지 제4호서식]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출석통지서 | | | | |
|--|------------|------|------|-----------------|
| 조정건명 | | | | |
| 신청인 | | 피신청인 | | |
| 분쟁조정 신청내용 | | | | |
| 출 석 대 상 자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비 고 |
| | | | | (참고인 또는 당사자) |
| | | | | |
| 출석일자 | 년 월 일(:) | | | |
| 출석장소 | | | | |
| <p>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 | | |
| <p>※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p> | | | | |

[별지 제7호서식]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 | | |
|---|----|--|------|
| 조정건명 | | | |
| 신청일자 | | | |
| 신청인 | 성명 | | 전화번호 |
| | 주소 | | |
| 피신청인 | 성명 | | 전화번호 |
| | 주소 | | |
| 분쟁조정 신청내용 | | | |
|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p> | | | |

[별표 1]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구 | 분 | 신 청 기 준 | 비 고 |
|--|----------------------|--|-----|
|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선임·임기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다음 각호 1에 한한다 ①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
| | 동별 대표자에 관한 사항 | 해당 동(동별 대표자 선출 기준)의 입주자 등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
| | 입주자대표회의장에 관한 사항 | 다음 각호 1에 한한다 ①동별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
| 2. 자치관리기구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다음 각호 1에 한한다 ①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
|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 입주자 등의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
| 4. 공동주택(공용부분)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 이해당사자 본인 | |
|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전체 리모델링 |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
| | 해당 동 리모델링 |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

<관계법령>

주 택 법

(개정 2005. 12. 31 . 법률 제7837호)

제2조 (정의<개정 2005.7.1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8, 2005.7.13, 2005.12.23>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라.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 내지 제45조·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1. "사용자"라 함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

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

다.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제29조 (사용검사 등) ①사업주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시장·군수·구청장(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
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
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
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
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
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철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
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
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
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

⑤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2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

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2호)

제67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개정 2005.3.8>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②위원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제 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천시 공고 2006 - 1324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6일

제천시장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간의 분쟁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 등 역할 구체화
- 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 구성
- 위원회 회의 및 의결 방법 규정
- 조정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
- 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 범위 설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9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제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주소 제천시 천남동 시청길15 우편번호 390-701)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640-5863, FAX 640-586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